

이 자료는 5월 7일(토) 조간부터
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 도 자 료

제 목 : 국고금관리법시행령 ·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

□ 우리부는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등 정부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초 국고금관리법을 개정 · 공포 (05.1.27)한 데 이어

- 법 개정애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· 입법예고하였음 (입법예고기간 : 05.5.7~5.27일)

<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① 칸막이식의 관리되고 있는 국고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**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을 최소화**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

-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**통합계정의 구체적인 범위** 등을 규정

※ 통합계정의 범위 : 일반회계 + 14개 특별회계

- 제외되는 특별회계 : 5개 특별회계(자금운용의 독립성이 강한 기업특별회계,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)

②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신한 · 새마을금고 ·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여 납부자 편의를 제고함(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의 보증을 의무화)

③ 국내기관의 초청으로 일시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시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지급이 가능케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함

④ 기타 국고금 운용에 따른 계정명칭 변경 등 일부 제도를 개선

*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 → 국고금운용계정, 국고여유자금전용계정
→ 국고금예탁계정 등

□ 향후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 ·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
금년 7.1일부터 시행 예정

※ 첨부 : 국고금관리법시행령 ·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

자료생산과 : 재정경제부 국고과 TEL : 2110-2352 · 2355

(과장 천 룡, 사무관 이병갑)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국 고 국 장